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가정법원의 면접교섭 허가 등에 있어 가정폭력 이력 확인 〉
■ 민홍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6862호)

2025. 8.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이 은 정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가정법원의 면접교섭 허가 등에 있어 가정폭력 이력 확인	2
가. 개정안의 내용	2
나. 현행 「민법」상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및 면접교섭권의 주요 내용	2
다. 검토의견	6
2. 관계기관 의견	1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민홍철의원 등 15인

(2) 제 안 일 : 2024. 12. 23.

(3) 회 부 일 : 2024. 12.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의 복리’가 추상적인 용어로 규정되어 있을 뿐, 가정폭력 이력 등의 확인의무가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무에서 그 사실을 고려할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가정폭력 가해자가 자녀 면접교섭에 동행한 배우자를 폭행하거나, 자녀를 납치하여 배우자에 대한 위협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함.

이에 법원이 자녀 면접교섭을 허가 또는 제한·배제·변경할 때에는 부·모·자(子) 간의 가정폭력 이력을 확인하고 이를 참작하여 결정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37조의2제4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가정법원의 면접교섭 허가 등에 있어 가정폭력 이력 확인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법원이 자녀의 면접교섭을 허가 또는 제한·배제·변경하는 경우 부·모·자(子) 간의 가정폭력 이력을 확인하고 이를 참작하여 결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안 제837조의2제4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第837條의2(面接交渉權) ① ~ ③ (생 략) <u><신 설></u>	第837條의2(面接交渉權)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가정법원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면접교섭을 허가 또는 제한·배제·변경하는 경우 부·모·자(子) 간의 가정폭력 이력을 확인하고 이를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현행 「민법」상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및 면접교섭권의 주요 내용

현행 「민법」 제837조1)에서는 이혼절차에 있어 자에 대한 양육책임

- 1)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당사자는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제1항), 협의에 관한 사항에는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제2항).

한편, 「민법」 제837조의2²⁾에서는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제1항),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일방이 미성년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2항),

이러한 부 또는 모와 그 자녀간 또는 비양육친의 직계존속에게 면접교섭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제3항).

면접교섭을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허용할 것인지 여부와 이를 제한

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2)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子)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

또는 배제할 것인가는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는바,

면접교섭권의 제한은 면접교섭을 일정한 시기, 기간 동안으로 제한하거나(시간적 제한), 장소를 양육친의 주거·거소 등으로 제한하거나(장소적 제한), 서신 왕래 및 전화통화만 허용하고 직접적인 면접교섭은 금지(방법적 제한)하는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며³⁾,

면접교섭권의 배제는 일률적인 기준보다는 개별 사건별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나, 비양육친이 자녀에게 폭행, 성폭력 등 신체적 학대를 한 경우나 그 밖에 정신적 학대를 한 경우, 비양육친이 면접교섭을 자녀 탈취의 기회로 악용할 위험이 있는 등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구체적인 사정이 있을 때는 면접교섭의 일시적 제한은 물론 전면배제가 고려될 수 있다는 해석이 일반적임⁴⁾.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대법원은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정서안정과 원만한 인격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자녀의 권리임과 동시에 부모의 권리이므로,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면접교섭을 허용하되,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있고,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는 자녀의 연령, 건강상태,

3) 윤진수, 『주해친족법 제1권』, 2015. 361면,

4) 민유숙, 『주석 민법 친족 1』, 2020. 288~292면.

면접교섭에 대한 의사와 함께 면접교섭을 청구하는 부모 일방과 자녀사의 유대관계나 친밀도, 면접교섭을 청구하는 의도나 목적, 자녀의 현재 양육환경에 비추어 면접교섭이 양육자인 부모 일방과 자녀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자녀가 새로운 양육환경에 적응하는 데 장애가 되는지, 면접교섭 청구인에게 양육자인 부모 일방 또는 자녀에 대한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등의 전력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에 단기적·장기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으며⁵⁾,

실제 면접교섭이 배제된 하급심 판례⁶⁾를 살펴보면, 양육자와 비양육친간 자녀의 양육을 두고 갈등이 있어 유형력 행사가 있었으며, 그 갈등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두 사람과의 갈등이 지속될 경우 자녀의 성장과 정서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을 일정 기간 배제한 사례 등이 있음.

5) 대법원 2021. 12. 16. 2017스628결정(면접교섭)

6) 부산가정법원 2018. 6. 5. 2017㉔단200264심판(면접교섭권배제)

다. 검토의견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혼인·이혼통계’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이혼 건수는 9만 2,000건으로,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의 이혼은 4만 9천 건으로 전체 이혼 비중의 53.2%,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은 4만 건으로 전체 이혼 비중의 42.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 자녀유무별 이혼 구성비(2023년)]



자료: 통계청, ‘2023년 혼인·이혼통계’, 2024. 3. 19.자 보도자료.

한편, 여성가족부의 ‘2023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 실적 보고’에 따르면, 가정폭력상담소를 통한 가정폭력 상담 건수는 36만 건으로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는바, 가정폭력 및 스토킹을 이유로 한 상담이 약 6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정폭력상담소 상담 유형(2023년)]

(단위 : 건, %)

연도·구분		가정 폭력 관련 상담					
		소계	가정 폭력 상담	가정 폭력 + 스토킹	이혼	부부 갈등	가족 문제
2021		319,337	263,556	2,973	12,420	16,538	23,850
		74.5	61.4	0.7	2.9	3.9	5.6
남성		98,915	84,471	335	3,614	4,880	5,615
여성		220,422	179,085	2,638	8,806	11,658	18,235
2022		343,844	287,802	3,744	11,396	16,606	24,296
		75.6	63.3	0.8	2.5	3.7	5.3
남성		109,169	94,761	617	3,378	5,255	5,158
여성		234,675	193,041	3,127	8,018	11,351	19,138
2023		361,101	313,413	4,023	9,505	13,447	20,713
		76.5	66.4	0.9	2.0	2.8	4.4
남성		124,000	111,280	548	2,732	4,284	5,156
여성		237,101	202,133	3,475	6,773	9,163	15,557
장애 인	남	1,392	1,099	15	9	36	233
	여	7,203	6,216	47	21	114	805

자료: 여성가족부, '2023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 실적 보고', 2024. 8. 7.

가정폭력 보호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가정폭력 피해자의 97.5%는 별거·이혼 등 배우자와의 관계 단절을 희망하고 있는데, 그 중 24.1%는 ‘자녀들에게 피해가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관계 단절을 희망하는 것으로 집계된 바 있음⁷⁾.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민법」에서는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 면접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나,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7) 법조신문, “이혼 자녀 만나기 전에 가정폭력 여부 확인을…가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2022년 2월 15일자 기사 등 참조.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폭력의 발생은 ‘자의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해당하므로 면접교섭에 대한 가정법원의 결정에 있어 판단 요소로 작동할 것으로 보이나, 해당 개념의 추상성과 개별·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는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면접 교섭 과정에서 가정폭력의 재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⁸⁾.

이에 개정안은 법원이 자녀의 면접교섭을 허가 또는 제한·배제·변경함에 있어 부·모·자(子) 간의 가정폭력 이력을 확인하고 이를 참작하여 결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면접교섭 과정에서 가정폭력 피해자가 폭력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면접교섭에 있어 자녀의 복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함에 개정의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첫째, 개정안은 법원이 자녀의 면접교섭을 허가 또는 제한·배제·변

8) 대법원 2021. 12. 16. 2017스628결정(“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면접교섭을 허용하되,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부모의 이혼 등에 따른 갈등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일부 발견되더라도 장기적으로 면접교섭이 이루어질 때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등을 깊이 고려하여, 가정법원은 개별 사건에서 합목적적인 재량에 따라 면접교섭의 시기, 장소, 방법 등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능한 한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면접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이러한 고려 없이 막연한 우려를 내세워 면접교섭 자체를 배제하는 데에는 신중하여야 한다.”)

경하는 경우 부·모·자(子) 간의 가정폭력 이력을 확인하고 이를 참작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이 확인해야 할 ‘가정폭력 이력’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즉,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정폭력 이력’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⁹⁾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지, 단순히 가정폭력 발생사실이나 신고가 있었던 경우까지 포함하는지 여부 등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그로 인해 가정폭력 이력을 확인해야 하는 가정법원으로서는 어느 범위까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지 그 범위가 모호하고, 이력 사항을 확인하는 방법¹⁰⁾ 또한 불분명하여 면접교섭권 결정에 대한 지연 문제

9)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및 제274조(아동학사)의 죄

다.~파. (생 략)

10) 법원행정처는 ‘가정폭력 이력’은 가정법원의 확인이 필요한 범위가 모호하고, 확인방법(ex.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조회에 한정되는 것인지 여부 등이 불분명해지며, 그 확인을 위해 소요되는 기간(ex. 범죄경력조회 회신기간) 동안 조사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함.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수사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말한다.

7. “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한다.

8. “범죄경력조회”란 수형인명부 또는 전산입력된 범죄경력자료를 열람·대조확인(정보통신망에 의한 열람·대조확인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신원 및 범죄경력에 관하여 조회하는 것을 말한다.

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가정법원이 확인해야 할 ‘가정폭력 이력’의 의미와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현재 실무에서 폭행, 성폭력 등 신체적 학대를 한 경우나 그 밖에 정신적 학대를 한 경우 등에 있어 면접교섭이 제한 또는 배제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원의 참작 대상에 ‘가정폭력’에 대한 사항만 명시하여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실무에서는 면접교섭권의 결정에 있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하여 제한·배제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있는데, 자녀에 대한 폭행, 성폭력 등 신체적 학대를 한 경우나 그 밖에 정신적 학대를 한 경우, 아동학대 등의 전력이 있는 경우, 양육자와 비양육친간 자녀의 양육을 두고 갈등이 있어 유형력 행사가 있었던 경우 등 ‘가정폭력’ 외에도 다양한 상황이 고려 요소로 작동하고 있음.

따라서 당사자 사이의 가정폭력 외에 아동학대 등 다른 범죄 경력 등에 대한 확인을 통해 면접교섭권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에도 가정폭력 이력 여부만을 확인하면 된다는 취지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9. “수사경력조회”란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를 열람·대조확인(정보통신망에 의한 열람·대조확인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신원 및 수사경력에 관하여 조회하는 것을 말한다.

셋째, 현행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에 따른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 법원의 참작요소와 제837조의2(면접교섭권)에 따른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경우에 대한 법원의 참작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민법」 내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즉, 현행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¹¹⁾에서는 이혼시 양육권을 결정함에 있어 자녀의 의사,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837조의2(면접교섭권)¹²⁾에서도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에 대한 결정시 자의 의사,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도록 하되,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
- 11)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 12)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子)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면접교섭 관련 결정시 참작 요소는 양육권 결정시 참작 요소에 규정된 사항을 고려하여 마련된 측면이 있는 점, 양육권 결정에 대한 중대성과 면접교섭 결정에 대한 중대성을 비교해 보았을 때 면접교섭 결정에 대한 참작 요소에만 가정폭력 이력을 확인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민법」 체계 내 정합성에 관해서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관계기관 의견

법무부는 자(子)와 자를 양육하는 부모 일방을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가정폭력 이력’의 범위가 가정폭력범죄로 입건·기소·처벌 등을 받은 사실을 의미하는지 또는 가정폭력 발생사실이나 단순 신고사항까지 포함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법원행정처는 가정법원이 면접교섭을 허가 또는 제한·배제·변경하는 결정을 할 경우 비양육친의 가정폭력 이력을 확인 후 참작하도록 하여 양육친과 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개정안에 명시된 ‘가정폭력 이력’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력을 의미하는 것인지 모호하고, 그 확인 방법 역시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개정안에 의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가정폭력 이력을 포함한 전체적인 범죄경력 등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에도 오히려 가정폭력 이력 여부만을 확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오인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관련 사항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058